

03 | 한중 FTA로 인한 기대효과는?

- 한·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① 실질 GDP는 0.96% 추가성장 ②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 ③ 고용은 53,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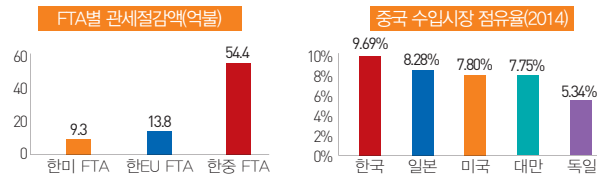
* 정부는 '14.12~'15.5. 동안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하여 “한·중 FTA 영향평가”를 실시

< 실질 GDP 및 소비자 후생 (누적 기준) >

구분	5년	10년
실질 GDP(%)	0.30	0.96
소비자 후생(억불)	56.34	146.26
고용효과(천명)	13.6	5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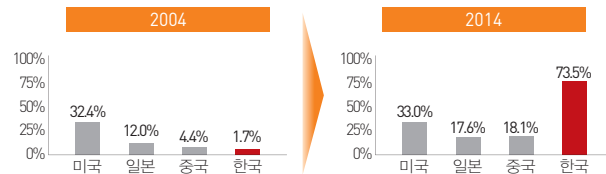
- 중국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 하였습니다.

- 국내 내수형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轉機를 마련하여 패션·영유아용품·의료기기·생활가전 등 분야 對中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.



-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역 및 투자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美·中·EU 3대 경제권과 FTA 체결로 FTA 체결국과 시장 규모 합계 세계 3위(73.5%)



-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제3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가 확대

04 | 한중 FTA 대응과 활용을 위한 지원대책은?

- 정부는 우리기업과 국민들이 한중 FTA 효과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한·중 FTA의 경제적효과 제고



- 이를 위해 정부는 취약 및 피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.

- (농수산업) 취약분야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, 중장기적 첨단화·융복합 및 수출확대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 제시
 - 발농업, 임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규모화, 조직화 등 지원
 - 수산업은 취약분야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가공·유통산업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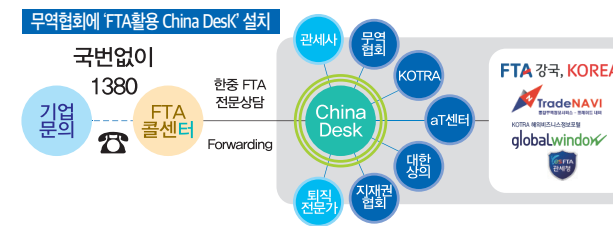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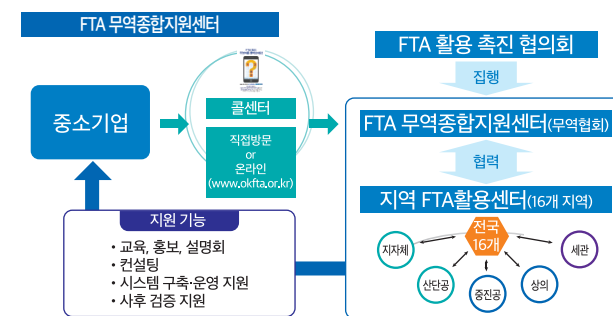
구분	투융자규모('16~'25년)
농업	1,595 억원
수산업	3,188* 억원

* 수산업 투융자는 한-중, 한-베트남 FTA 지원액을 합한 규모

- (제조업)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과 활용촉진 지원에 주력
 - 중소기업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선제적 기술개발, 공정혁신 등을 통한 산업체질 강화 추진
 -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, 문화컨텐츠 진출 지원, 수출인프라 구축, FTA활용 방안 지원

구분	내용	투융자규모('16~'25년)
중소기업 지원	사업전환(2,600억원), 긴급경영안정(500억원)	3,100억원
취약부문 지원	경쟁력 강화 융자지원	3,000억원
수출촉진, 활용지원	해외유통망 진출,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	1,935억원
제조업 합계		8,035억원

- 우리 기업의 FTA 대응과 활용 지원을 위한 “FTA 무역종합지원센터”에 이어 한중 FTA 전담지원 시스템인 “차이나데스크”를 구축하였습니다.



CHINA DESK 주요 기능

- 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, FTA규정 해석 등 FTA활용 지원
- 2 중국시장 동향, 진출전략 지원, 판로개척 등 수출지원
- 3 중국 내수 및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
- 4 인증 등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

- 한·중 FTA 관련 궁금증, 무엇이든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!!!

- 차이나데스크 전화번호 : 국번없이 1380
- 차이나데스크 홈페이지 : okfta.kita.net, fta1380.or.kr
- 차이나데스크 위치 :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 3층
- FTA 상세설명 홈페이지 : www.FTA.go.kr

한·중 FTA

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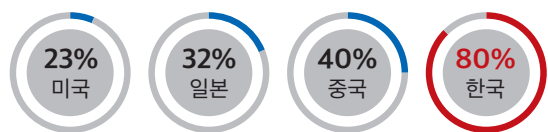


01 | 한중 FTA, 어떻게 추진되었나요?

-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비중이 80%이상인 국가로서 세계시장 개척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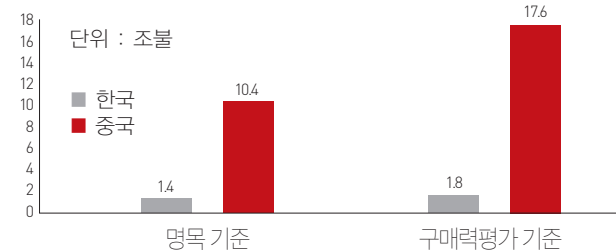
<GDP 대비 대외경제(수출+수입)비중>

(14년 기준)



-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대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, 양국간 중장기 미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였습니다.

<2014년 한국과 중국 GDP 비교>



- 한중 FTA는 '0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공동연구 및 협상을 진행하였으며, '14.11.10일 정상간 실질타결 선언, '15.6.1일 정식서명을 거쳐 6.4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. ('15년 연내 발효추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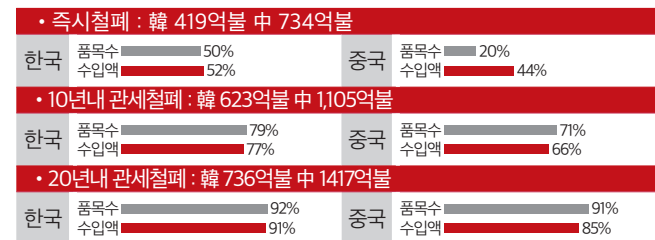
<한중 FTA 추진 경과>



02 | 한중 FTA 주요내용은?

01. 상품 양허

- 품목수 기준 91%(7,428개), 수입액 기준 85%(1,417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 하였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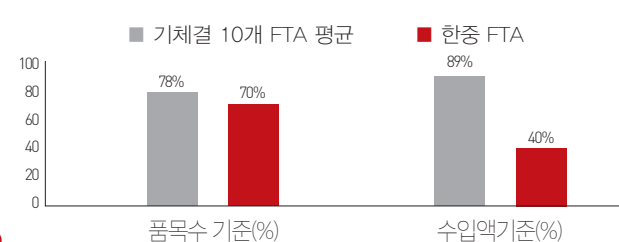
-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하고,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.



-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, 對중국 농식품 수출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.

- 우리는 고추, 마늘, 양파, 사과, 감귤, 배,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을 양허제외하고 중국 농수산물 시장은 90% 이상 개방

<농산물 자유화율 비교>



<주요 제조업 품목별 양허 결과>

품목군	韓	中
일반·NT	즉시철폐 (5,823개, 414.9억불) 원유, 나프타, 반도체제조장비, 의약품 등	(1,258개, 733.4억불) 제트유, L형강, 스테인레스열연강판(3mm미만)
	5년내 (1,113개, 30.3억불) 플라스틱제품, 금속절삭기계, 의료기기 등	(1,589개, 58.2억불) 항공기 부품, 유선통신기기 부품 등
	10년내 (1,900개, 165.7억불) 냉장고, 세탁기, 화장품 등	(1,849개, 311.6억불) 냉장고·에어컨(소형), 냉연강판 (0.5~1mm) 등
민감·ST	15년내 (579개, 76.9억불) 타이어, 휘발유 등	(840개, 218.4억불) 나프타, 아스팔트, 윤활기유 등
	20년내 (12개, 26.8억불) 편직제 의류, 축전기, 일부 자동차 부품 등	(369개, 92.2억불) ABS수지, 도료, 차량용 축전기, 콘택트렌즈 등

02. 서비스·투자

- 중국의 서비스시장 추가개방, 투자보호 조항과 투자자-국가 분쟁해결 절차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* 중국의 법규·제도 정비 등을 감안, 후속 협상을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기회도 확보 (협상 발효 후 2년 내 개시, 개시 후 2년 내 완료)

분야	반영 내용
법률	▶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 (상하이 자유무역지대(FTZ)에 한정)
건축/엔지니어링	▶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다른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
건설	▶ 상하이 FTZ 내 설립 시 외국인자본 비율 제한 없이 중외 합작 프로젝트 수주가능
환경	▶ 폐수, 고형 폐기물처리, 배기가스 정화, 소음저감,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%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
엔터테인먼트	▶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% 지분 한국기업 허용

03. 원산지

-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우리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하였습니다.

- 기계류, 철강, 가공식품 등 대다수의 품목들은 우리기업이 선호하고 가공무역국가에 유리한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
HS 코드	품목	원산지 기준
01~14류	신선 농수산물	완전생산기준
15~24류	가공 농수산물	세번변경기준
27~38류	석유화학 제품	4단위 세번변경기준
	경질석유와 조제품	6단위 세번변경기준
50~60류	섬유제품	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(40%)
61~62류	의류제품	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(40%)
72류	철강	4단위 세번변경기준
84, 85, 90류	기계, 전기전자, 정밀기기	세번변경기준(4,6단위)
	액정 디바이스 및 부분품	부가가치기준(45%)
87류	자동차	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(60%) 동시적용
	자동차 부품	부가가치기준(50%)

-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발효 즉시 특혜 관세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(310개 품목 대상)

04. 규범·협력

- 우리 기업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였습니다.

- (통관) 48시간 통관 원칙,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등
- (시험인증)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, 시험인증기관 상호인정협력 강화

- (제도) 정부간 비관세 작업반 설치, 중개절차(Mediation) 도입

-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다양한 규범·협력 분야를 포함 시켰습니다.

- 전자상거래 분야를 별도 챕터로 포함(중국 기체결 FTA중 최초)
- 양국 관심분야(중소기업, 에너지·자원, 관광, 의약품·의료기기, 화장품, 한중 산업단지 등) 협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